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56 (2022. 4. 4 ~ 4. 8)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인사/노무	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
	기업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변동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인건비 변화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함.
국회 계류안	ESG	③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및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함. 청정수소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의 내용 신설.
공포 법령	ESG	④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업장에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 등의 측정·조사 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이 허용될 수 있는 최대배출기준 등을 구체화 함.
입법/행정예고	건설/부동산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재 시·도 등 지자체로 위임해 놓은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하도록 함.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강은미 (정의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CCTV, 컴퓨터·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등 다양한 감시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의 활성화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근무태도나 업무성과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사업장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감시설비는 시설 보호, 노동자 안전, 영업비밀 보호 등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상 필요를 명분으로 도입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위치나 이동 경로, 이메일이나 SNS 활용 내역, 개인적 취향이나 성향, 노동조합 활동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이러한 감시설비의 운용 방식이나 운용 범위 등이 노동자들에게 적절하게 고지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감시설비 도입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동의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감시설비의 설치·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 및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도입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감시설비로 인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서울경제 22.04.01. 기업이 나를 감시할 권리 없다… 노동감시 금지법 발의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IWXU71A	22.03.30.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작업 과정·상황, 행동, 성향 및 특징을 포함한 개인정보 등을 관찰, 수집, 기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로서 사용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감시설비”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감시설비의 설치 및 감시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다. 감시설비의 설치·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만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9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라. 근로자에게 감시설비의 대체 수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하며,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감시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을 규정함(안 제97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마. 감시설비의 설치·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재판, 징계절차 또는 인사평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97조의3 신설).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H2I0O1Z0U5M1S4P3W8E4P9K8Q7R4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한무경 (국민의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지속되어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임.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현실적인 관계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대부분 중소기업이 떠안으면서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의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고 이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른 인건비의 변화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P2X0H1M2P0I1K5C3F1I1J0A0J1J1		22.04.01. 제안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는 변동성이 많은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였음. 또한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과 대학에서 수소경제에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더 이상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이제 현행법의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두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청정수소로 인증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한 비율을 청정수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소부문에서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며, 발전부분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도록 청정수소 보급제도를 구축하여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청정수소발전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을 명시함(안 제3조제1항). 다.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중앙일보 22.03.31. “새 정부도 밀어준다”… 정유·화학기업, 미래동력은 ‘수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9727	21.05.24. 제안 21.06.28.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21.07.29. 소위 상정/ 축조심사 21.11.23. 소위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21.12.01. 소위 상정/ 축조심사 22.01.05. 소위 상정/ 축조심사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라. 청정수소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수소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청정수소인증기관에게 청정수소인증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며, 청정수소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받은 청정수소제조설비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마. 청정수소의 생산업자등이 청정수소인증을 받도록 하고,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생산업자등은 청정수소판매증명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바.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후 청정수소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청정수소인증을 취소하거나 청정수소판매증명서의 발급금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정수소인증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 신설). 아.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 대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수소의 일정량을 청정수소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의 판매·사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의7 신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자. 청정수소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의무구매량은 청정수소발전시설의 현황,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하도록 하며, 청정수소발전 전력거래에 관한 운영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의8 신설). 차. 판매·사용의무자, 구매의무자가 판매·사용의무량 또는 의무구매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함(안 제25조의9 신설). 카.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안 제57조제4호의2 신설).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을 신설함(안 제59조제1항).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H1Q0D5U2J0L0W9B4U2S2R6C1T5A9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1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알코올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사업장에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 등의 측정·조사 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이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인 최대배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출처:https://www.law.go.kr/법령/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2.04.01. 일부개정 22.04.01. 시행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안이유 부실시공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하여 조사기관과 처분기관을 일원화하여 적기에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중대 부실시공 사고 국토교통부 직권 처분(안 제86조제1항) – 중대건설현장사고는 국토부에서 조사함에도 행정처분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적기에 적정수준의 처분에 한계가 있어 조사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할 필요가 있음.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7952?pageIndex=2	문화일보 22.03.29. 정부, 중대안전사고 건설업체 처분권한 '지자체 → 국토부' 환원키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2901072021087001	22.03.29. ~ 22.05.09.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헤럴드경제][기사]민주노총, '4월 투쟁' 선포…"尹, 중대재해법 무력화 혈안"(2022.04.0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405000599

주요내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하기 위해 혈안이 된 경제계 목소리만 경청하고 있다”며 투쟁을 선포함.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조차 차별이 발생하는데, 윤 당선자는 경제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 공언하며 중대재해법을 겨냥하고 있다”고 꼬집음.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새 정부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규제 완화를 부르짖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대책에만 골몰하는 기업들을 향해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장함.

[이데일리][기사]현대중공업 울산공장서 폭발사고로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2022.04.0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1686632292184&mediaCodeNo=257&OutLnkChk=Y

주요내용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섬. 폭발 사고로 가스절단 작업을 하고 있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오전 9시쯤 숨짐.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 중지를 조치하고 사고 원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음.

[한국경제][기사]'중대재해법 쇼크' 덮쳤다…건설업 생산, 7년 만에 최대폭 감소(2022.03.3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33155861

주요내용 코로나19 여파로 서비스업이 위축되면서 산업생산이 약 2년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함.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 생산이 약 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함.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5월 이후 21개월 만. 건설경기 냉각에 대해 통계청은 건설자재 가격이 뛰면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미룬 탓이라고 설명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이 지연된 것도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여파도 무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옴.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 '시범 케이스'로 걸릴까봐 건설사들이 휴무 등을 통해 공사를 늦추면서 생산이 급감했을 수 있다는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오미크론 확산이 지속하면서 여전히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는 점은 무척 아쉽다"면서도 "최근 발표된 3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상승 전환한 것을 볼 때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향후 안정적 관리 단계로 접어들면 내수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말함.

[연합뉴스][기사]기계 끼임사고 70대 노동자 사망…충북 중대재해처벌법 '1호'(2022.03.31.)

https://www.yna.co.kr/view/AKR20220331118000064?input=1195m

주요내용 충북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된 첫 사례가 나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충북 보은군의 A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힘. 도내 기업이 중대재해법을 위반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 이 사고는 지난 2월 24일, A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B(70)씨가 기계를 수리하던 중 머리가 설비에 끼여 발생함. 수사 결과 B씨는 함께 근무하던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중 스위치를 잘못 눌러 변을 당했으며, 노동청은 A 업체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음. 하청업체 대표는 4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됨.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윤형석
변호사

T : 02-3016-8737
E : hsyoon@draju.com

인사/노무팀·기업법무그룹



이승택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91
E : stlee@draju.com

ESG 자문그룹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건설/부동산팀



전재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8,10~16층
T. 02-563-2900 E.pr@draju.com W. www.draju.com